

#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홍보대행 회사 운영자이던 피고인 1이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에게 특정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피고인 2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 피고인 1은

- 홍보대행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6.경부터 2015. 7.경까지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내지 주필이던 피고인 2에게 자신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의 게재, 관련 언론보도 등을 부탁하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7. 12.초순경부터 2015. 5.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

#### ▣ 피고인 2는

- [피고인1 관련 배임수재]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

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

- **[甲 관련 배임수재]** A회사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甲 및 A회사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합계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乙 관련 배임수재]** 甲대 후임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乙로부터 乙 및 A회사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유람선 관광 비용 등 합계 1,72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변호사법 위반]** 乙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탁을 받게 되자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丙에게 乙의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조카에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나. 소송경과

▣ 제1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피고인들 사이의 일부 배임증재·배임수재 및 피고인 2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
- 피고인 1: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쌍방 항소
- 피고인 2: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쌍방 항소

▣ 원심: 전부 무죄

- 피고인 1: 파기, 전부 무죄 ➡ 검사 상고

- **피고인 2: 유죄 부분 파기, 무죄 / 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 검사 상고**

- ▣ 원심의 무죄 이유

- **피고인 1 부분 및 피고인 2의 피고인 1 관련 배임수재 부분**

- 공소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12회 중 5회는 교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인 1이 자신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의 게재 등을 부탁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홍보대행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도 자료 수집 정도의 차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2가 기사 보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2의 甲 관련 배임수재 부분**

- 甲이 A회사에 우호적인 개별 사설, 칼럼의 게재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甲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피고인 2의 乙 관련 배임수재 부분**

- 공소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5회 중 2회는 교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함
- 공소사실 중 일부는 A회사가 피고인 2를 초청하여 공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공소사실 중 일부는 乙이 아닌 A회사 총괄부사장이 개인적 친분에 따라 피고인 2와 가족들을 초대하였던 것으로 보여 乙이 피고인 2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공소사실 중 일부는 乙이 전임 대표이사인 甲 시절의 관례에 따라 재물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를 공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설령 乙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일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 피고인 2의 변호사법위반 부분

- 乙이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2의 처조카를 취업시켜 준 시점은 2014. 9. 중순경인 반면, 피고인 2가 乙로부터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탁을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12.경임 ⇒ 乙이 피고인 2의 처조카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시점에 피고인 2와 乙이 위 취업 기회 제공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피고인 2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에 대한 알선 내지 청탁의 대가라는 사정을 상호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 2가 알선 내지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피고인 2의 甲 관련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甲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의 당부

### 나. 판결 결과

- ▣ 일부 파기환송[피고인 2의 甲 관련 배임수재 부분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甲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 다. 판단 내용

### ▣ 관련 법리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함(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 2의 지위, 甲과 피고인 2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A회사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 甲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2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 ▣ 나아가, 피고인 2가 甲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A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3. 판결의 의의

- ▣ 원심은 피고인 2가 甲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이 피고인 2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 ▣ 대법원은, 甲이 당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2의 지위, 甲과 피고인 2의 관계, 당시 A회사의 상황, 제공된 재산

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2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나아가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